

축산업계

소식

제주	2	20	-	-	-	-	2	20
계	130	1,300	35	350	35	350	200	2,000

2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지원대상 :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축산농가

나. 사업주체 : 시장, 군수

다. 사업기간 : '91.9~'91.12월

라.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사업물량	지원단가	융자조건
2,000	200개소	10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3%

'91축산폐수처리 추가지원(정화시설)사업 실시

총200개소 연리 3%로 융자

농림수산부는 '91축산폐수처리 사업중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에 추가로 지원되는 정화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키로 하였다.

1.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표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정 화 조		툽발 발효돈사		건조장(퇴비사)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1	10	-	-	-	-	1	10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경기	21	210	4	40	6	60	31	310
강원	8	80	1	10	-	-	9	90
충북	10	100	4	40	1	10	15	150
충남	31	310	6	60	1	10	38	380
전북	20	200	1	10	1	10	22	220
전남	13	130	10	100	-	-	23	230
경북	5	50	7	70	23	230	35	350
경남	19	190	2	20	3	30	24	240

마. 설치방법 : 환경처 고시(제88-21호) 표준설계도 활용

○정화시설 : 낙농, 육우, 양돈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화 방법 우선 적용

○툽발발효돈사 : 양돈농가 적용

○건조장(퇴비사) : 양계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가급적 1차 발효처리시설 유도

바. 시도지사는 사업의 감독과 기술 및 행정지원 철저

사. 축협중앙회장은 축협의 여신규정에 의거 축산진흥기금을 집행하고 사후관리 철저

아. 기 타

○시도 요청물량 대비 지원물량이 부족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및 제주도는 사업지원 우선 순위를 상수보호구역, 축산업 계속 영위 가능농가, 자담능력이 높은 농가순으로 선정할 것.

○시도지사와 축협중앙회장은 '91. 12. 31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보고서식 추후 승부)

축산폐수 및 유해잔류물질 교육

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 처리와 육류내 유해잔류 물질 방지를 위하여 11월4일 부터 13일까지 6회에 걸쳐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본회는 각 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순

회교육 일정과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 회원 및 양계 농가가 교육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순회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내역

시 간	강 사	교 육 내 역
13 : 00-13 : 50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김 옥 경	축산폐수 처리 대책
14 : 00-14 : 50	환경처 오수관리과장 유 지 영	축산폐수 관련 환경시책
15 : 00-16 : 40	축산종합연수원 시범사육과장 유 재 일	가축분뇨 이용 및 처리
16 : 50-18 : 30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독성과장 박 종 명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2. 교육대상자 차출 기준

○양축가 : 전달교육이 가능한 농어민 후계자 우선

○축산단체 : 축협도지회 및 지역축협, 업종조합, 낙농·육우, 양돈, 양계단체

○축산공무원 : 시도 및 시군 관계관, 시도가축 위생시험소, 시군농촌지도소

○환경공무원 : 시도 및 시군 관계관

3. 교육일정 및 장소

일 자	교육장소	참가지역	교육인원	비 고
91.11. 4(월)	축협중앙회 회의실	서울, 인천, 경기	400명	환경담당 80명포함
91.11. 5(화)	횡성군청	강원	200명	환경담당 40명포함
91.11. 6(수)	충북도청	대전, 충남북	300명	환경담당 70명포함
91.11.11(월)	광주(미정)	광주, 전남북	300명	환경담당 70명포함
91.11.12(화)	대구시민회관	대구, 경북	250명	환경담당 60명포함
91.11.13(수)	창원(미정)	부산, 경남, 제주	1,700명	환경담당 60명포함
계				

※교육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시도 및 축협도지회간 협의의 조치할 것.

국민경제교육 실시
근검절약 정신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부는 지난 10월에 우리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근검절약과 근로정신을 일깨워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일하는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범 국민적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기간인 10월9일(수)에 “우리경제의 현황과 근검소비절약”이라는 주제로 과천정부제2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KDI 양수길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와 국민경제에 대한 교재를 제작,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91 2/4분기 사료검사 결과 집계, 분석 1/4분기에 비해 위배건수 감소

농림수산부에서는 '91 2/4분기 사료검사 내역을 다음과 같이 집계, 분석하였다.

이번 검사에서 배합사료는 총1,538건중 위배건수가 8건으로 0.5%를 나타냈으며 1/4분기의 1.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배합사료를 종류별로 볼때 양어용의 위배건수가 6.1%로 가장 높았고, 양계용, 비육용, 대용우는 위배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보면 단백질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조지방과 유효물질은 1/4~2/4분기 동안 한건도 위배되지 않았다.

단미사료는 총452건을 조사한 결과 위배건수가 17건으로 3.8%를 나타냈으며 1/4분기의 5.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미사료를 종류별로 볼때 어분과 육분이 각각 8%로 위배건수가 가장 많았고 익모분, 골분, S.P, 보조사료 등은 문제성을 보이지 않았다. 위배성분별에서는 유사단미사료혼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금가공 잔재물, 특정폐기물에서 제외

환경처가 지난달 26일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예고시 특정폐기물중 동물성 잔재물에 포함시켰던 가금가공 잔재물이 도계업계의 강력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항목 자체가 빠진 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성 잔재물은 피혁가공 잔재물, 육가공 잔재물, 수산물가공 잔재물만이 해당되고 육가공 잔재물도 가축의 도살과정에서 발생하는 털, 내장안의 내용물 및 가축분을 제외시켜 상당부분 완화했고 가금가공 잔재물은 완전하게 제외되었다.

도계업계는 가금가공 잔재물을 특정 폐기물에 포함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입법예고대로 통과될 경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처리시설 구비는 물론 관계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도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크게 걱정했다.

육계경영기술지표 설정

정부가 축산업 장기발전 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축협중앙회측에 의뢰한 육산경영기술지표 설정결과가 나왔다.

이중 육계경영기술지표는 사육규모를 현재의 1만수에서 2~3만수로 확대하고 출하일령은 48.2일에서 49일, 출하체중은 현 1.83kg에서 2.1kg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당 증체량은 현 38g에서 43g으로, 육성율은 95.8%에서 96%로 개선하고 사료요구율은 2.27에서 2.01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영기술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책수단으로서 △사육규모의 전업화 확대 △육계개량 △경영지도 개선 △비축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육농가측 실천수단에는 자가노동력 경영규모를 2~3만수로 확대해야 하고 기계화를 통해 관리 성력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업화, 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 공동출하, 공동방역, 생산·수집·가공·판매의 계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닭고기 품질향상을 위해 저지방계 생산, 저콜레스테롤 함유 닭고기 생산, 오메가 닭고기 생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촉진 홍보강화, 가공품 개발 주력 등을 주문하고 있다.